

구 입 물 품 명 세 서

품 명	규 격	단위	수량	단가	금 액	비 고
계						

승 낙 사 항

1. 2014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, 그 납품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.
2. 납품기일내에 완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1,000분의 (1.5)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.
3.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간이 경과된 후 10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·견본 등과 다른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.
4. 제3호에 따라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.
5. 전 각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.